

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1]

2급저장소의 상호간의 거리기준(제34조제4호관련)

저장하고자 하는 폭약	저장소상호간의 거리	비 고
톤(이하)	미터(이상)	저장하는 폭약의 양은 저장소의 저장량 중 가장 많은 양을 저장한 저장소의 저장량을 기준으로 한다.
10	33	
9	32	
8	30	
7	29	
6	28	
5	26	
4	24	
3	22	
2	19	
1	15	